#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7 발의연월일: 2024. 6. 5.

발 의 자:백혜련·김영진·민병덕

한민수 · 김한규 · 김준혁

염태영 • 이재정 • 김승원

박성준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

수원시와 화성시의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하여 소음발생, 고도제한 등 주변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고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적 잠재력이 높은 도심 내 국토 활용의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어 수원 군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한편, 경기 남부권의 경우 반도체·소재·바이오 의학 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항공 물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남부권 내 민간공항이 부재하여 기업의 수출활동과 지역산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또한 국가적으로 수도권 여객 수요의 증가에 따른 공항 포화가 예상되고 있어 근미래의 여객 수요 대응도 필요한 실정임.

이에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신설을 포함한 경기남부통합국제공

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, 개발절차, 지원사업, 특별 구역 지정, 소요 재원의 조달, 국가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개발사업 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남 부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성장 거점을 조성함으로써 경기도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견인 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- 가.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은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·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함 (안 제3조).
- 다.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,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「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을 따르도록 함(안 제5조).
- 라.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, 이전주변지역 특별구역 지정,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,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수립·승인,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, 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 설치

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).

- 마.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함(안 제14조).
- 바.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(안 제22조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」(의안번호 제15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#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항공교통 발전기반 조성을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"(이하 "통합국제공항"이라 한다)이란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 군 공항(이하 "군 공항"이라 한다)을 이전하여 군 공항과 「공항시설 법」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정·고시되는 공항이 함께 건설되는 공 항을 말한다.
- 2. "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"이란 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.
  - 가.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(이하 "군 공항 이전사업"이라 한다)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건설에 관한 사업

- 나. 공항개발에 따라 필요한 접근교통수단 등 기반시설의 건설, 공항이용객 및 항공관련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·항공 화물유통시설·정보통신시설 등 공항의 업무와 관련된 시설의 조성
- 다. 항공 관련 업무 종사자와 통합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는 자 등을 위한 주거시설과 이에 수반한 생활 편익시설 등의 조성
- 3. "종전부지"란 군 공항이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부지를 말한다.
- 4. "이전부지"란 군 공항이 이전되어 설치될 부지를 말한다.
- 5. "이전부지 주변지역"(이하 "이전주변지역"이라 한다)이란 이전부지가 소재한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이와 연접한 소음피해지역 시·군·구 중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」 제20조의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고 국방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.
- 6. "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"이란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7. "종전부지 개발사업"이란 종전부지를 활용하여 「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첨단연구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.

- 8. "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"란 군 공항이 위치한 경기도 수원시와 경기도 화성시를 말한다.
- 제3조(기본방향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합국제공항을 건설하고 종전부지를 개발하여야 한다.
  - 1. 군 공항의 이전과 민간공항의 신설을 포함한 여객·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
  - 2. 활주로 관리 및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이 확보된 공항의 신속 한 건설
  - 3.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첨단연구산업의 기능이 활성화된 도시 조성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 제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,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이 법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

에 따른다.

- ②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및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③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다.
- ④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「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다.
- 제6조(다른 계획과의 관계) 이 법에 따른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1. 「국토기본법」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
  - 2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
  - 3. 「항공사업법」 제3조에 따른 항공정책기본계획
  - 4. 「공항시설법」 제3조에 따른 공항개발 종합계획
  - 5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· 군기본계획
  - 6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

제2장 통합국제공항 건설 및 지원 등

- 제7조(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등의 시행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하고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의 가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은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제1항의 대체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  - 1.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
  - 2.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사업
  - 3. 공항과 연계되는 철도,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사업
  - ②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군 공항 및 제1 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가액을 뺀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.
  -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지원할 수 있다.
  -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기반을 상실한 이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자의 생계지원, 이주정착 또는 생활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따라 이전주변지역을 다음 각 호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1. 「관광진흥법」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
- 2. 「건축법」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
-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- 4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2조 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
- 5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스마트도시 특화단지
- 6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
-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특별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- 제8조(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등)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수원시장과 화성시장이 공동으로 시행하고, 「공항시설법」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. 다만,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로 협의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

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 상호 간에 군 공항 이전사업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경기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.
- ④ 경기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조정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서면으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9조(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 등)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는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·고시에 관한 절차는 「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.
  - ② 제8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실시계획의 수립·승인·고시에 관한 절차는 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에 따른다.
  - ③ 「환경영향평가법」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 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 률」 제6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, 통합국 제공항 건설사업을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 호에 따른 국방·군사 시설사업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9호에

따른 공항개발사업으로 본다.

- 제10조(인가·허가 등의 의제) ① 국방부장관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·인가·지정·승인·협의·신고·해제·결정·동의 및 계획의 수립·변경 등(이하"인가·허가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가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 다만, 제16호에 대해서는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국방·군사시설사업에 한정한다.
  - 1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허가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  - 2. 「공항시설법」 제6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  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
  - 4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·협의 및 같은 법 제 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·협의
  - 5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

- 6. 「도로법」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
- 7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
- 8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른 사도(私道) 개설의 허가
- 9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방지(砂防地)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
- 10. 「산림보호법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·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
- 11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
- 12.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 시사용허가·신고
- 13.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
- 14. 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의 허가
- 15. 「수도법」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
- 16. 「자연공원법」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
- 17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허가
- 18.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

- 19. 「초지법」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(草地轉用)의 허가
- 20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
- 21. 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
- 22. 「하천법」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·허가·인가·결정·신고·지정·면허·협의·동의·심의 또는 해제 등(이하 "인·허가등"이라한다)을 받은 것으로 보며, 같은 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·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.
- 1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
- 2. 「건축법」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,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,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,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,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,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
- 3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
- 4. 「골재채취법」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
- 5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・사용 허가 및 점용・사용 허가의 고시,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・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,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, 같은법 제33조에 따른매립면허의 고시, 같은법 제35조에 따른매립면허관청과의협의 또는매립면허관청의 승인및 같은법 제38조에 따른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
- 6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·군관 리계획의 결정,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,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·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, 같은 법 제 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의 고시
- 7. 「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」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
- 8. 「농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
- 9. 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23조, 「물환경보전법」 제33조 및 「소음 ·진동관리법」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
- 10. 「도로법」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·고시,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,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

-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,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- 11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 의 점용허가
- 12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
- 13. 「도시철도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
- 14. 「사방사업법」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
- 15. 「산림보호법」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해제
- 16.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·제5항 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·신고
- 17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
- 18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 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
- 19. 「산지관리법」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·해제,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·일시사용 제한지역 지정의 해제, 같은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제15조에 따른 산지전

용신고

- 20.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
- 21.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
- 22. 「수도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,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
- 23. 「위험물안전관리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
- 24. 「자연공원법」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(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- 25.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
- 26. 「초지법」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
- 27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
- 28. 「하수도법」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·유지의 허가,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 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
- 29. 「하천법」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(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

-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)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가·허가등 및 인·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행정기본법」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.
- 제11조(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제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「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사업예정지역
  - 2.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4조제5항에 따라 고 시된 공항·비행장개발예정지역
  - ② 제1항에 따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,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통합국제공항건설추진단) ①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통합국제공항건설추 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 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추진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계기관·법

- 인·단체 및 사업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 청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(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협의기구) ① 국방부장관과 국토교 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  - ②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의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3장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지원

- 제14조(정부의 재정 지원) 국가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- 제15조(부담금의 감면 등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, 「농지법」, 「초지법」, 「산지관리법」, 「하천법」,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,

「자연환경보전법」,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개선비용 부담법」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및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개발부담금, 농지보전부담금, 대체초지조성비, 대체산림자원조성비, 하천 점용료・사용료, 교통유발부담금, 생태계보전부담금, 공유수면점용료・사용료, 환경개선부담금,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제16조(민간자본 유치)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.
- 제17조(민간자본 유치사업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 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시행하 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1.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
  - 2.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
  - 3.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
 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 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

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- 제18조(지역기업의 우대)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·물품·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.
- 제19조(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)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자 및 이전주변지역의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.
- 제20조(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 등에 관한 특례) 제8조에 따른 사업시 행자는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체육시 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 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- 제21조(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)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 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산업단지의 종류를 전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전환의 요건·절차 등에 관하여는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2를 따른다.
- 제22조(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) 기획재정부장관은 통합국제 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「국가재정법」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

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보칙

- 제23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- 제24조(보고·검사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시행자에게 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(군 공항 이전사업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0조에서 같다)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행자의 사무실·사업장,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5조(시정명령 등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

자에게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.

- 1.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적힌 공사 착수 예정 일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아니한 경우
- 2.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준 공확인 결과 공사를 끝낸 시설이 실시계획 승인 내용과 다른 경우3. 허가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
- 제26조(허가 등의 취소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,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
  - 2.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
  - 3.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승 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
  - 4. 사정 변경으로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5. 제25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상당 한 기간 내에 적합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과징금의 부과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제26조에 따라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·승인의 효력 정지 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하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- 제28조(청문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.

#### 제5장 벌칙

- 제29조(명령 등의 위반 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11 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
  - 3.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 을 위반한 자
- 제30조(통합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1.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20조제7항을 위반하 여 시설을 사용한 자
  - 2.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56조제1항 또는 제2 항을 위반한 자
  - 3.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
  - 4.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시설을 사용한 자

- 제31조(업무방해 죄)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및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32조(제지·퇴거명령에 대한 불이행의 죄) 제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「공항시설법」 제56조제7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20 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(科料)에 처한다. 이 경우 범칙행위 처리에 관한 절차는 「공항시설법」 제71조부터 제74조까지를 따른다.
- 제33조(양벌규정)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「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법에 그에

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